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WTO/DDA 회의 참석
2. 출장목적: WTO/DDA 협상 회의 참석 및 자문
3. 출장지역: 스위스 제네바
4. 출장기간: 2007년 10월 14일 - 21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국제농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 윤 식

6. 출장일정

일 정	주 요 활 동 내 역	비 고
10월 14일 (일)	서울 -->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 제네바	
10월 15일 (월)	G-10 (수입국) 회의 참석 Room E (의장 주재)회의	
10월 16일 (화)	G-10 회의	
10월 17일 (수)	G-10 회의	
	Room E (의장 주재)회의	
10월 18일 (목)	G-10 vs. EU 양자 회의	
	G-10 회의	
	Room E (의장 주재)회의	
10월 19일 (금)	open-ended session	
	G-10 회의	
	Room E (의장 주재)회의	
10월 20일 (토)	제네바 --> 프랑크푸르트	
10월 21일 (토)	프랑크푸르트 --> 서울	

II. 주요 출장 결과

1. 총평

- 지난 7월 발표된 Falconer 의장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로 각 국 또는 각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 10월에 2주간 회의를 하고 1주 쉬었다가 10월 마지막 주에 회의를 재개

하기로 함.

- 10월 회의에서는 수출 경쟁, 특별품목, 특별품목 지정에 따른 TRQ 확대 방법 등에 대해서만 다루어짐. 개도국의 수입구제조치(SSM: Special TRQ 관리 방식을 포함한 다른 사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 사안들은 10월 말 재개될 회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는 개도국 모임인 G-33보다 수입국 모임인 G-10 회의가 자주 있었음. G-10의 공식 입장은 이미 발표된 의장 초안도 G-10에게는 과도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임. 특히, TRQ 관리나 특별품목 지정과 그에 따른 TRQ 증량 방식,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치 등에 대해서 G-10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한 주장을 하고 있음.
- 11월 초에 G-10의 공식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 및 문구 수정을 여러 차례 하였음.
- 농업부문에서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농업부문(NAMA)에서의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DDA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일부는 내년 정도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DDA 협상의 타결 여부는 NAMA의 타결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은 공통된 전망이다.

2. 주요 논쟁

- 허용대상 국내 보조 (green box)
 - 직불제 관련하여 예외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조건이 분명치 않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되었음. 직불제에 따른 보조는 일반적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급 기준이 되는 토지가 고정됨.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여건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기준 면적도 갱신할 필요성이 제기됨. 갱신기간이 짧으면 생산과 연계되어 생산중립적(decoupling)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됨.
 - 의장 초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을 갱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

시하였는데, 첫 번째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갱신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임. 특히, 상당 기간이 몇 년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5~7년 정도가 가장 유력함.

- 갱신과 관련하여 EU는 갱신의 개념에 단순한 수혜조건의 농가간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동조함. 일반적으로 보조의 기준이 되는 전체 면적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순히 수혜 자격만 이전하는 것은 생산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과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 DDA 협상에서 개도국에게만 특혜를 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품목임. 수입국은 특정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대신 일정량을 TRQ로 지정하여 수입해야 함.
-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논쟁이 됨. 가장 먼저 제시된 방법이 지수(indicator)에 의한 방법임. 지수에 의한 방법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농촌 생활 유지 등을 구체적인 지수로 나타내고 이를 기준으로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임. 하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통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품목의 일정 비율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됨. G-10은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hybrid approach를 주장하고 있음.
- TRQ를 지정할 때 수입량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함. 이번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 해당 품목의 전체 HS 단위가 TRQ로 지정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HS 단위만 TRQ로 지정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소비량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함. 호주는 해당 품목 전체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EU나 일본 등은 TRQ로 지정되는 HS 단위만 소비량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임.
- 일부 HS 단위만 TRQ로 지정할 경우를 부분지정(partial designation)이라고 하는데 부분지정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음. 부분지정의 경우 소비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음. 일부 국가들

(EU)은 해당 상품 전체의 수입량 대비 해당 HS 단위 품목의 수입 비중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제기됨.

○ 열대작물 이슈

- 열대작물로 분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아주 낮은 관세를 적용하자는 것임.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열대작물로 분류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크게 낮추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은 쌀, 감귤, 바나나 등임.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이 열대작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TRQ 관리

- 수입국들은 자국내 여건 때문에 TRQ 물량 전체를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DDA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TRQ 물량 가운데 수입되지 않은 물량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각국은 TRQ 물량을 배정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수출국들은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은 2004년 말에 타결된 쌀 재협상 결과가 이번 DDA 협상에서 개정될 새로운 TRQ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하는 점임.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쌀 협상 결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TRQ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되어 새로운 협상을 하거나 제도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음. 우리나라에게 가장 바람직한 협상 결과는 기존의 TRQ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도입되는 TRQ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지만 DDA 협상에서는 과거 UR 때처럼 예외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